
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 - 146호

석탄산업장기계획 공고

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산업장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001. 7

산 업 자 원 부 장 관

다 음

I. 수립배경

□ 금년으로 기존 「석탄산업장기계획(91~01)」의 유효기간 만료

- 석탄산업법 제3조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

※ 석탄산업법 제3조(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)

“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”

□ 2000년도 국정감사시 2001년도 상반기중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 약속

II. 석탄산업의 현황

1.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경위

- 정부는 '89년부터 폐광·감산 등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, 10여년만에 석탄산업이 1/6 수준으로 위축

	'88	'00	'00/'88(감소율)
생 산(만톤)	2,430	415	- 2,015(△82.9%)
수 요(만톤)	2,564	416	- 2,148(△83.8%)
탄 광(개)	347	11	- 336(△96.8%)
근로자(명)	62,259	8,207	-54,052(△86.8%)

※ 외국과 비교시, 합리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됨

· 년 평균감소율 : 한국 15%, 영국 5.0%, 일본 11%, 독일 4.5%

2. 석탄수급현황

(단위: 천톤)

	'88	'91	'96	'00	증감율(%)	
						년평균
<수 요>	25,641	17,181	4,502	4,159	△ 83.8	△ 13.2
- 연탄용	22,926	14,996	1,960	1,192	△ 94.8	△ 21.8
- 발전용	2,407	2,070	2,514	2,850	18.4	1.4
- 기 타	308	115	28	117	△ 62.0	△ 7.6
<공 급>	36,415	25,453	13,439	14,933	△ 57.5	△ 7.2
- 생 산	24,295	15,058	4,951	4,150	△ 82.9	△ 13.7
- 이월재고	9,595	8,013	8,508	10,737		
- 기 타	2,525	2,382	△ 20	46		

※ 연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, 정책적으로 한전의 발전용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발전용이 총수요의 69% 점유

3. 정부지원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 분	'88	'91	'96	'00	'01
가행탄광 생산지원	3,190	4,656	4,206	2,783	2,438
- 탄가안정대책비	-	1,782	3,268	2,449	2,314
- 기타	3,190	2,874	938	334	124
감산·폐광 지원	121	529	1,006	105	567
지역경제 지원	-	-	216	1,003	1,136
관련기관 지원	129	100	244	1,200	800
합 계	3,440	5,285	5,993	5,091	4,941

- 가행탄광 생산지원 : 가격 보조, 생산 지원, 안전 및 공해방지, 비축 등
- 감산·폐광 지원 :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, 광해사업비
- 지역경제 지원 :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, 대체산업창업지원, 탄광지역개발
- 관련기관 지원 :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등

Ⅲ. 석탄산업의 과제

1.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재고누적

○ '89년 이후 비경제탄광은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나,

- 연탄용 수요감소 추세가 생산감소 추세보다 빨라,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음

※ 누적재고 : 10.7백만톤('00년 현재), 자금사장 : 약 1.2조원

○ 한전 민영화로 수요확대 곤란, 무연탄 정부비축사업의 종료 등으로 공급과잉은 지속될 전망

2.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 누증

○ 국내석탄산업은 생산원가가 국제가의 2.5~3배에 이르는 등 경제성을 상실하였으며, 년 5,0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지원으로 국내산업 명목 유지

※ 국내석탄 생산원가 : \$90/톤, 국제가격 : \$31~35/톤

○ 탄광업계의 자생력 부족, 폐광·감산 등 구조조정 사후처리, 지역진흥 사업확대 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당분간 정부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

○ 반면, 최종에너지중 국내석탄의 비중이 0.6%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에특회계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아('01년 23.2%),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합리화 필요성 증대

3. 급속한 폐광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확대

- 급격한 감산에 따른 탄광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, '95년 이후 고한·사북 등 탄광지역에서 생존권 보장 시위가 빈발,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

구 분	내 용	정부 부담
'95. 2 사북시위	· 탄광근로자·주민 5천여명 5일간 병역 등 4대의무 거부, 갯내농성 등 시위	·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 · 대체산업 융자,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지원 · 내국인출입카지노 허용
'99. 9 사북시위	· 근로자·주민 8천여명 9일간 갯내농성 등 시위	· 폐광대책비 인상 · 발전용탄 수요 제도화
'99.12 태백시위	· 태백시민 1만여명 12일간 시위	· 탄광지역개발사업 신설 · 대체산업 유치 지원 등
'00. 9 도계시위	· 도계주민 3,500여명 철도 점거 등 시위	· 석공 중앙갱폐쇄 유보

4. 석탄산업 위축에 따른 공적기관의 기능조정 필요성 대두

- 석탄공사의 경영부실 가속화 및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쇠퇴
 - 경영여건의 악화로 차입금이 누적되고, 금융비용의 증가로 결손과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는 구조적인 악순환 상태
- ※ '00년말 현재 누적결손 6,067억원, 자본잠식 1,584억원
-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존치 여부
 - 「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('98.8)」에 의거 2001년 동 사업단이 해산될 경우, 석탄산업 합리화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과 석탄업계 및 광산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됨

IV. 장기 석탄수급 전망

1. 장기 수요 예측(인하대학교)

- 민수용 수요는 600천톤 내외의 기저수요 유지
 - 시계열 및 다중회귀 분석 모형에 근거
- 발전용 수요는 2,500천톤 내외의 안정적 소비
 -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(1999~2015)에 의함

(단위: 천톤)

	'01	'02	'03	'04	'05
수요	3,862	3,715	3,632	3,164	3,250
- 발전용	2,850	2,850	2,850	2,456	2,607
- 민수용	912	815	732	658	593
- 산업용	100	50	50	50	50

2. 장기 석탄수급 전망

- 2005년 3,000천톤 내외의 수급안정을 위해, 순차적인 감산·폐광을 통한 약 1,300천톤의 생산량이 감축될 전망
 - 비능률 탄광의 자율적 감산·폐광 유도

(단위: 천톤)

	'01	'02	'03	'04	'05
수요	3,862	3,715	3,632	3,164	3,250
공급	14,604	14,112	13,507	12,875	12,711
- 생산	3,830	3,370	3,110	3,000내외	3,000내외
- 채고	10,774	10,742	10,397	9,875	9,711

※ 생산량은 가행탄광의 감산·폐광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

V. 석탄산업 장기대책

1. 석탄산업 합리화 지속 추진, 장기 적정 생산량 결정

< 기본방향 >

- 2005년까지 3,000천톤/년 내외 수준에서 수급안정 도모
 - 비능률 탄광을 중심으로 자율적 감산·폐광 유도
 - 민수용 및 발전용 무연탄 소비의 안정적 확보

□ 적정생산체제 구축

- 석공은 생산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
 - '02년까지 노조와의 협의하에 120만톤 규모로 감산
- 민영탄광은 비능률 탄광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산·폐광 추진
 -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행탄광에 대한 정부지원기준 제시

< 가행탄광에 대한 정부지원기준 >

- 경영여건, 개발여건, 부존여건, 지역경제, 안전도 등 세부운영기준을 설정,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의 지속지원여부를 결정
-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경영성파가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, 법적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 감축·폐지
- 운영기준에 적합한 탄광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나머지 탄광에 대하여는 시장에 맡김

□ 소비의 안정적 확보

- 연탄가격 지원 지속 등으로 연탄 기저수요를 600천톤 수준으로 유지
 - ※ '00년 연탄제조비 141.25원/개, 수송비 24.75원/개, 해상조작비등 3,440원/톤 지원
- 발전용 수요 확보를 위해 「장기전력수급계획」에 발전소비량 적극 반영

2.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

< 기본방향 >

- 광역교통망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·확충
- 대체산업 유치, 폐광카지노 등 지역경제진흥사업 활성화

□ 광역교통망 및 기반시설 정비, 확충

-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국도 38호선 확·포장 사업을 관계 부처와 협의, 조기 완료
-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('96~'05)을 통해, 폐광지역 SOC 정비·확충, 도시환경정비 등 지원

□ 지역경제진흥사업 활성화

- 탄광지역 개발사업('01~'10)으로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
- 정부가 태백지역에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
 - 이미 계획된 부분은 에너지특별회계로 지원하되,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추가되는 부분은 타부처 예산 활용방안 강구
- 폐광카지노를 2003년까지 국제규모의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여, 낙후된 폐광지역 개발 및 인근지역 균형발전에 기여
- 대체산업 창업지원사업 활성화
 - 지원대상 업종 : 제조업 중심 → 지역특성화업종으로 확대
 - 금리인하 : 4% 이내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
- 민자유치를 위해 법인세·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, 추진

3. 탄광근로자 지원방안 마련

< 기본방향 >

- 탄광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 노력
- 폐광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

□ 탄광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 노력

- 산재보험료, 학자금, 진폐기금 등 탄광 근로자의 후생복지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 실시
- 노사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임금 조정시, 이를 적극 수용

□ 폐광·감산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

- 석탄산업법시행령 개정('00.12.29), 폐광·감산고시 개정('01.1.9)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, 근로자 대책비 평균 2.5배 인상, 감산시 퇴직근로자 지원제도 신설 등 근로자 지원규모 대폭 인상·현실화하였음

※ '01.1월 폐광대책비 인상내용

- 근로자대책비 : 임금 16개월분 → 40개월분
- 광업자대책비 : 최고 8,100원/톤 → 최고 10,000원/톤
- 감산시 근로자지원금 신설 : 임금 30개월분 지원

-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, 폐광·감산으로 인한 탄광 근로자의 우려를 방지하고 이직기간중 생계안정을 지원

- 단, 감산제도로 인해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, 감산제도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

4. 광산 안전관리 강화 및 광해방지사업 활성화

< 기본방향 >

-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 광산 안전관리체제 강화
- 광해방지사업 추진체제 개선

□ 광산 안전관리체제 강화

- 광산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
 - 노·사 합동 안전진단 실시, 자체안전규정 적정여부 점검 등
- 대형재해예방 집중 관리
 - 가연성가스 및 출수 취약지구에 대한 광산별 전담자 지정
 - 대형사고 발생 우려 구역에 대한 채탄금지 조치
 - 사고발생시에 대비한 효율적 구조체제 확립
- 안전 교육·훈련 활성화
 - 광산근로자 안전교육기간 연장(2일→3일/년)
 - 광산보안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병행

□ 광해방지사업 추진체제 개선

- 현행 지자체와 사업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해방지사업 추진체계를 사업의 효율성·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
- 광해중 환경분야에 대한 중복검사 및 점검제도 개선
 - 검사 및 개선명령권은 환경부로 일원화 추진
 -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황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

5. 석탄관련 공적기관 기능조정

< 기본방향 >

-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며, 2005년까지 동 방안에 따른 조치 완료
-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해산여부 검토

□ 석탄공사 처리방안 마련

- 석탄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지속 추진
 - '02년까지 노조와의 협의하에 120만톤 규모로 감산
 - * 석공 생산량 추이: ('00)1,476천톤→ ('01)1,323천톤→ ('02)1,200천톤
- 석공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향후 처리방안을 관계기관 및 이 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마련하고, 2005년까지 동 방안에 따른 조치 완료

□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해산여부 검토

- 사업단은 '98.8월 경영혁신계획에 의거, '01년까지 해산키로 되어있고, 해산을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일정을 검토중
- '02년부터 감산·폐광 등 제2차 합리화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므로,
 - 현 사업단 해산의 득실과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,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해산여부를 조속 결정

부 칙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